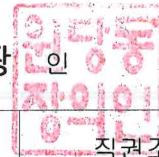
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18일

원당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택	김 *택 1988-06-27	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819번길 (원당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8-18
유 *범	유 *범 1978-04-10	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후로78번안길 (당하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8-18